#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리모델링 설비·소방공사

[전기소방 시방서]

2019. 01

# - 목 차 -

- 1. 자동화재 탐지설비
- 2. 유도등 및 유도표지
- 3.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
- 4. 비상방송설비

# 1. 자동화재탐지설비(NFSC 203)

- 가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)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.
- 2)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충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. 다만,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충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.
- 3)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천 제곱 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
  - 추가)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.
- 4) 계단 (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 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.), 경사로, 엘리베이터 권상기 실, 린넨슈트,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 정하되,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 (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.)로 하고,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(지하층의 층수가 1개층 일 경우는 제외한다.)는 별도로 하나 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의 수평거리가 50미터의 범위안에 2이상의 계단,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.
- 5)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,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6) 스프링클러 설비, 물분무 등 소확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확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 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확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.
- 나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)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.
- 2)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3) 수신기는 감지기,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4) 화재, 가스,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 과 연동하여 감지기,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  - 추가)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
- 5)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.8미터 이상 1.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것.
- 6)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묶지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.

- 다.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) 계단·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<개정 2008.12.15, 2015.1.23.>
  - 2) 복도(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)
  - 3) 엘리베이터 승강로(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)·린넨슈트·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<개정 2008.12.15, 2015.1. 23.>
  - 4)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
  - 5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·숙박·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<신설 2015.1.23.>
    - ① 궁동주택·오피스텔·숙박시설·노유자시설·수련시설
    - ②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    - ③ 의료시설,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·조산원
    - ④ 교정 및 군사시설
    - 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
- 라.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- 1) 삭제
  - 2) 감지기 (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)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.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.
  - 3)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.

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		차동식스: 1종	포트형 2 <b>종</b>	보상식스: 1종	포트형 2 <b>종</b>	정온스 특종		:트형 2종
4m미만	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	90	70	90	70	70	60	20
	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	50	40	50	40	40	30	15
4m이상	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	45	35	45	35	35	30	
8m° °	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	30	25	30	25	25	15	

- 4)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.
- 4)의 2.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,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확기를 단속적으로 취급 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5) 차동식 스포트형,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 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.

다만, 주방,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

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( 단위 : 제곱미터 )

- 6)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.
- 7)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.
  -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 (3종에 있어서는 20미터)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(3종에 있어서는 10미터) 마다 1 개 이 상으로 할 것.
  -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.
  -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할 것.
  -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.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.
- 마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.
- 1)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.
- 2) 5층(지하층을 제외한다)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확한 때에는 발확층 및 그 지상층에 한하여, 1 층에서 발확한 때에는 발확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, 지하층에서 발확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.
- 3)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충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, 당해충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. 다만, 제97조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4)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.
- 5)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① 정격전압의 80%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  -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 이되는 것으로 할 것.
  - ③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바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)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,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.8미터 이상 1.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.
- 2) 소방대상물의 충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.
- 3)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,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로 10미터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한다.

- 사.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
- 1)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궁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,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.
- 2) 개폐기에는 "자동화재탐지설비용"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.
- 3)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치(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설치할 것.
- 아.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.
- 1) 전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(KS C 3328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, 내화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. 다만,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) 금속관공사, 가요전선관공사, 합성수지관공사,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의 방법에 의할 것.
- 3)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.
  -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.
  -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.5 m 이내로 할 것.
  -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,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.
- 4)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.
- 5)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준기술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.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.
- 6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, 닥트(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닥트로 본다)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. 다만, 60 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7) P형 수신기 및 G.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.
- 8)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음(\(\Omega\))이하가 되도록 하며,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% 이상이어야 할 것.

# 2. 유도등 및 유도표지(NFSC 303)

### 가. 피난구 유도등

- 1)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  - ② 직통계단,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  -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
  -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
- 2)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통로 유도등

- 1) 통로 유도등은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1-1)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- ① 복도에 설치할 것
-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할 것
- ③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. 다만, 지하충 또는 무창충의 용도가 도매 시장, 소매시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,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
- 1-2)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-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. 다만,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할 것
-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
- 1-3)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
  -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(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)설치할 것
  -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- 1-4)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
- 1-5)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,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
- 2) 조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0.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평으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(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 미터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) 이어야 한다.
- 3)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한 백색바탕의 녹색등으로 하여야 한다.

다만,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다. 객석유도등 설비공사

- 1) 객석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.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수(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)의 유도등을 설치하고,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.2룩스이상이어야 한다.

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(m)

설치개수 = ----- - 1

4

2)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,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.2룩스이상이 되어야 한다.

#### 라. 유도등의 전원

- 1)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.
- 2)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, 그 용량은 당해 유도등을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11층이상의 충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여객자동차터미널,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있어서는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.
- 3)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  -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.
  -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 (유도등이 축전지설비에 내장한 것 또는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)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마.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1)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충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 할 것.
- 2)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것.
- 3)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·광고물·게시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.
- 4) 유도표지는 부착판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것.
- 5)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6) 유도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  -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.

- ②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미터 떨어진 위 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확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- ③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·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.
-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20분간 발광한 후 1제곱미터당 24밀 리 칸델라이상으로 할 것.

## 3.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(NFSC 304)

#### 1.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

- 가.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따르는 복도,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여 야 한다.
- 나.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이상이 되도록 할 것.
- 다.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.
- 라.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전원 수전설비, 자가발전설비, 또는 축전지설비 (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.)에 의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1)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할 것.
- 2)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실의 벽과의 거리가 0.1M 이상이 되게하고 누수 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.
- 3)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점검 및 조작에 필요한 조명설비와 비상전원의 표시를 할 것
- 4)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.
- 5)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령에서 정한 것외에 600V 2종 비닐전연 전선 ( KS C 3328 )
- 6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 하도록 할 것.

#### 2.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

- 가.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(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)에 1개 이상 설치
- 나. 백화점, 대형점,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이내마다 3개이상 설치
- 다.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
- 라.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

- 마.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
- 바.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
- 사.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,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 시 충전되도록 할 것
- 아.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.

# 4. 비상방송설비(NFSC 202)

- 1. 모든 기자재는 신품 최상급 이어야 하며 자재 규격 및 전기설비의 모든 규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2. 도급자는 시방서 또는 별첨 도면상에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라도 본 설계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완전한 방송설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급설치하여야 한다.
- 3. 도급자는 제작도면과 필요한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4. 스피커는 도면에 명기가 없는것은 6" 정격 출력 3W 로 시설하고, 도면에 명기가 되어있는 것은 명기되어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5. 스피커는 천정매입형, 노출형, 벽부형중 도시된것을 사용한다.
- 6. 구내방송은 일제방송과 부분 그룹방송이 가능하도록 자체방송설비를 갖추며 일반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.
- 7. 비상방송은 일반방송보다 우선하며 비상방송의 작동시에는 일반방송은 자동 으로 차단되어야 한다.
- 8. 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경보용 방송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9. 층별로 회로를 구분하여 회로별 방송이 되어야 하며, 일반방송중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는 방송설비에 설치된 1개의 비상방송 스위치를 조작하는것 으로서 그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10.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자동적으로 방송설비 전용의 비상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.
- 11. 사용되는 전선은 HIV(내열비닐절연전선)를 사용한다.
- 12.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그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,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,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13.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4.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15.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.